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김호평, 김소영, 김기대,
유 용, 채인묵, 정진술, 이광호,
김경영, 권영희, 김경우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로서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·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,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를 자율성·다양성·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 참여 민주주의 교육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자 함.

- 따라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,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을 추가 함 (안 제5조제5호)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첨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,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, 갈등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(<u>신설</u>)</p>	<p>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(현행과 같음)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,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,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</u></p>